

## 한국 정부, 이란 '다야니' 2차 ISDS 전부 승소

-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,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-

- 대한민국 정부는 9. 28.(월) 22:00경(한국시각) 이란 국적의 다야니(Dayyani) 일가 6명이 韓-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1. 10.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(ISDS)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.
- 또한 판정부로부터 '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 (75%)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'는 명령도 받았습니다.
- 청구인 다야니 일가[대표 레자 다야니(Reza Dayyani)]는 2010. 11.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물취당하자, 2015. 9.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. 6. 승소한 바 있습니다.
- 정부는 2022. 4.경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 측에 지급하고, 약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으나, 청구인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. 10.경 본건(2차) ISDS를 제기하여 다툼을 이어왔습니다.
-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판정부를 상대로 '1차 사건의 배상 의무를 국제법·국내법에 따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'는 점을 다각도로 설득한 끝에,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정부는 ▲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ISDS를 오용하고자 한 청구인의 시도를 차단하였고 ▲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,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하여,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1. 개요

- 대한민국 정부는 2026. 9. 28. 22:00(한국시각)경 이란 국적의 다야니 一家 6명(이하 ‘청구인’)이 韓-이란 투자보장협정(이하 ‘투자협정’)\*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하였습니다.

\*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」

- 청구인의 약 7,700억 원\*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,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(75%)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약 8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\* 5억 17만 1,697 유로(EUR, 선고일 기준 환율 1,546원)

- 청구인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·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 (Entekhab)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으로, 2010.경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몰취당하자, 이를 돌려 달라며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. 6. 5. 약 730억 원 및 이자에 대한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.

※ 정부는 '18. 7.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'19. 12. 패소 확정

- 정부는 2022. 4.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, 나머지 약 236억 원은 법원의 압류·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한 바 있습니다.

- 그럼에도 청구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2021. 10. 18.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, 약 5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.

- 또한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지출한, ▲소송비용 중 75%인 약 40억 원과 ▲중재행정비용 전액인 약 8억 원도 모두 청구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도 선고하였습니다.

## 2. 주요 경과 ※ 이하 한국시간 기준 / 구체적 경과는 별첨 참조

- 2021. 10. 18. 중재신청서 접수
- 2023. 5. ~ 2024. 9. 서면 공방
- 2024. 9. 30. ~ 10. 5. 구술심리(네덜란드 헤이그)
- 2025. 1. ~ 2025. 3. 심리 후속 서면 공방
- 2026. 9. 28. 중재판정 선고

## 3. 판정 요지

### 배경 및 다야니 1·2차 ISDS 사건 경과

- **(청구인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시도)**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·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(Entekhab)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가문으로, 2010.경 자회사 D&A를 내세워 워크아웃 중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고자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납부했습니다.
  -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578억 원을 전액 몰취하였습니다.
- **(1차 ISDS 경과)** 청구인은 위 계약보증금 몰취가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5. 9. 14. 1차 ISDS를 제기하였고 2018. 6. 5. 정부 패소판정이 선고\*되어 2019. 12. 20. 확정되었습니다.

\*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

- **(1차 ISDS 배상금 지급)** 당시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인해 정부가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(OFAC)의 승인이 필요하여, 정부는 2022. 1. 위 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과 협의를 거쳐 2022. 4. 약 622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, 나머지 약 236억 원은 법원의 가압류\* 등 명령에 따라 2022. 12. 공탁한 바 있습니다.

\* 2020. 1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니아전자(舊 대우일렉트로닉스)가 청구인 중 1인(레자 다야니)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측의 1차 ISDS 배상금 채권 약 236억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, 2022. 9. 1심에서 위니아전자가 승소함에 따라 압류·추심명령 발령

○ **(청구인의 2차 ISDS 제기)** 그럼에도 청구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1. 10. 18. ‘한국 정부의 배상금 미지급이 투자협정 위반’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, 정부의 배상금 지급·공탁이 있는 후에도 다툼을 이어 나갔습니다.

- 청구인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약 7,7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, 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.

\*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한 손해액은 약 1조 2,600억 원이나, 이후 구술심리 및 후속 서면 공방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반박에 따라 약 7,700억 원으로 자진 감축

### 본건 판정의 쟁점과 요지

#### □ 판정부의 관할 : 있음

○ 정부는 1차 ISDS 사건의 배상금은 투자협정 상의 ‘투자’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, 판정부는 「위 배상금은 청구인이 이전에 몰취당한 계약보증금의 증가물로서 원래 투자의 연장」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,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※ 정부는 ▲1차 ISDS 사건의 기판력이 본건에도 미치고 ▲본건 청구가 오직 1차 ISDS 판정 집행만을 위한 권리남용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음

#### □ 정부의 ‘공정·공평대우 의무’ 위반 : 없음

○ 청구인은 정부가 ▲청구인의 국적(이란)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OFAC 승인을 받아야 배상금을 줄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하였고, ▲정부의 1차 판정 취소소송 제기, ▲국내 법원의 압류·추심명령에 따른 공탁도 공정·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○ 반면 정부는 ▲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으므로 타국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, ▲청구인의 요청대로 배상금을 외화(外貨)로 지급하고자 취득한 OFAC 승인, 국제법상 정당한 취소소송 제기, 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·추심명령에 따른 공탁은 모두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.

○ 판정부는 ▲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 및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

- 나아가 ▲1차 ISDS에서 중재지 영국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,  
▲국내 사법부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한 것 역시 청구인에 대한 ‘자의적이고 부당한 대우’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#### □ 정부의 ‘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’ 위반 : 없음

○ 판정부는, 투자협정상 ‘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’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산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지 말라는 취지일 뿐 정부가 직접 외화를 송금하는 본건 배상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

○ 나아가 판정부는,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은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.

#### □ 정부의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 위반 : 없음

○ 청구인은, 한국 정부가 1차 ISDS 배상금 지급을 지연한 그 자체로 투자협정상 ‘중재판정 준수 의무’를 위반하므로, 이를 독립된 원인으로 하여 새로운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
○ 그러나 판정부는 판정 준수 의무는 판정 자체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,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한다면 투자협정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- 또한 판정부는 ▲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 구제를 받아야 하고 ▲가사 새로운 ISDS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정부가 1차 ISDS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상금의 ‘원화’ 지급을 제안한 이상 위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## 4. 의의 및 향후 계획

### □ 7,700억 원 국고유출 위험을 철저히 방어

-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, 청구인이 주장한 약 7,700억 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하였습니다.
- 나아가 판정부는 청구인 6인이 연대하여 ▲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%인 약 40억 원을 정부에 지급하도록 하고 ▲정부의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.

### □ ISDS를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오용하려는 시도 차단

- 이 사건은 청구인이 1차 ISDS의 배상금을 집행국의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하여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함으로써, 투자자의 「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」 악용을 차단했습니다.
- 특히, 투자자가 ISDS에서 패소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나, 국내 법원의 정당한 압류·정부의 공탁 등 사법절차를 문제삼는 불복성 중재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, 「국제규범에 부합하는 ISDS 배상금 집행의 선례」를 마련하였습니다.

### □ 복잡한 분쟁에 효과적인 법정부적 ISDS 대응체계 입증

- 본건은 청구인의 투자협정 위반을 방어하는 ISDS 대응 뿐 아니라, ① 미국의 對이란 제재(외교/외환), ② 한국 민사법상 공탁의 변제효(민사소송·집행), ③ 기업매각 및 금융채권·채무(금융·투자)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이 얹혀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.
- 이에 정부는 2019. 4.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‘국제투자 분쟁대응단’을 구성하고, 관계 부처와 정부대리로펌 간에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청구인 측의 공세를 완벽히 막아냈습니다.

※ 정부측 대리로펌 : (국내) 법무법인 피터앤김 (국외) Arnold & Porter

※ 청구인측 대리로펌 : (이란)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 (프랑스) Eversheds Sutherland

## □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정부의 '신의성실'과 사법 주권

- 이번 판정은 對이란 제재 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1차 ISDS 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인정받은 판정입니다.
-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법상 '신의성실 원칙'에 부합하며, 외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이행 지연을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또한, 법원의 압류명령과 정부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이중 변제를 압박한 청구인에 대해,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사법체계를 청구인이 우회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주권을 지켜 냈습니다.
- 본건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 제재 하에서, ISDS 판정의 이행시 국제 제재 규범 준수가 요구될 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법적·외교적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.

## □ 향후 계획

- 정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\*에 철저히 대비하고,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며, 청구인 측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 등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\* 판정 정정/해석/보충신청 등 절차, 청구인의 판정 취소소송(중재지 : 런던)☐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국무조정실<br>재정금융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          | 윤영주 | (044-200-219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     | 임만혁 | (044-200-2192) |
| 담당부서 | 재정경제부<br>국제경제과   | 책임자 | 과 장           | 문기영 | (044-215-763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     | 유정민 | (044-215-7635) |
| 담당부서 | 외교부<br>경제협정규범과   | 책임자 | 과 장           | 주은혜 | (02-2100-7716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     | 최영재 | (02-2100-7719) |
| 담당부서 | 법무부<br>국제투자분쟁과   | 책임자 | 과 장           | 조아라 | (02-2110-3331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검 사           | 민경원 | (02-2110-4245) |
| 담당부서 | 산업통상부<br>통상분쟁대응과 | 책임자 | 과 장<br>(직무대리) | 한주실 | (044-203-594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     | 박경은 | (044-203-5952) |
| 담당부서 | 금융위원회<br>구조개선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          | 전은주 | (02-2100-2910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     | 김미애 | (02-2100-2914) |

## 별첨

## 다야니 1, 2차 ISDS 사건 주요 경과

※ 1차 사건 관련 경과 2차 사건 관련 경과

| 날 짜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0. 4.              | 엔텍합,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0. 11.             | 엔텍합,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1. 5.              | 채권단,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 몰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5. 9. 14.          | 다야니, 1차 사건 중재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8. 6. 5.           | 1차 사건 판정 선고 : 정부 전부 패소, 배상금 약 730억 원 및 이자 배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8. 7. 3.           | 정부, 영국법원에 1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9. 12. 20.         | 영국법원, 취소소송 1차 사건 판결 선고 : 정부 패소, 청구 기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0. 1. 30.          | 서울중앙지방법원, 배상금 중 일부 약 236억 원 가압류*<br>* 위니아가 청구인 중 1인(레자 다야니)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1. 10. 18.         | 청구인, 2차 사건 중재 제기(최초청구액 약 1,300억 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4. 28.          | 양 당사자, 1차 사건 배상 합의서 체결 및 배상금 일부* 지급(약 622억 원)<br>* 2022. 1. 7. OFAC 라이선스를 받은 후 가압류 금액 제외 지급에 청구인과 합의             |
| 2022. 7. 12.          | 2차 사건 절차 정지(1차 배상금 지급 협의를 위해 약 6개월 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9. 26.          | 서울중앙지방법원, 위니아-레자 다야니 件 본압류 이전 및 추심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12. 2.          | 정부, 추심금 상당 권리공탁(약 236억 원)<br>* 정부는 공탁 후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, 청구인은 공탁은 청구인에 대한 의무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|
| 2023. 1. 15.          | 공탁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이견으로 2차 사건 절차 재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. 5. ~ 2024. 8.   | 2차 사건 서면 공방(청구액 약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. 9. 30. ~ 10. 5. | 구술심리(네덜란드 헤이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. 10. ~ 2025. 5.  | 양측 심리 후속 서면 공방(청구액 약 7,700억 원으로 감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6. 9. 28.          | 2차 사건 판정 선고 : 정부 전부 승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